

붙임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고시

매 입 대 상	매입기준(현행조례)	고 시
1. 자동차 신규등록		
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		
1) 전가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		
① 1,600cc이상	취득세 과표의 4/100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② 2,000cc이상 (일반형)	취득세 과표의 5/100	매입 의무 (단, 리스차량*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**는 '26.12.31.까지 매입면제)
* 리스차량 :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하는 자동차 ** 하이브리드 자동차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		
(다목적형)	취득세 과표의 4/100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2) 전기·수소전기자동차		
① 중형	취득세 과표의 4/100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② 대형 (일반형)	취득세 과표의 5/100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(다목적형)	취득세 과표의 4/100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3) 7~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	대당 390,000원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이상 (경형 제외)	취득세과표의 1.5/100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,000cc이상(경형 제외)	취득세과표의 1.5/100	매입면제('26.12.31.까지)
2. 자동차 이전등록		
(시·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)		
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		
1) 전기·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		
① 1,600cc이상	취득세 과표의 3/100	매입의무
② 2,000cc이상	취득세 과표의 5/100	매입의무
2) 전기·수소전기자동차		
① 중형	취득세 과표의 3/100	매입의무
② 대형	취득세 과표의 5/100	매입의무
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(경형 제외)	취득세과표의 1.5/100	매입의무
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,000cc이상(경형 제외)	취득세과표의 1.5/100	매입의무
※ 전기·수소전기자동차의 이전등록 시에는 상기 요율로 산정한 매입의무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감면(할인)하여 매입('26.12.31.까지) ('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제4항의 감면기한 준용)		
3. 각종 허가		
가. 도로·하천(소하천포함)·구거부지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	점·사용료부과액의 5/100 (점·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허가 시는 최초년도 점·사용료부과액에 대해서만 5/100 매입 이후 허가에 대해서는 매입 불요)	매입의무
나. 토지형질 변경허가		
① 농지 (전 · 답)	m²당 1,500원	매입의무
② 산 · 임야, 잡종지등 기타지목	m²당 3,000원	매입의무
다. 골프장 등록	m²당 60원	매입의무
4. 각종 계약		
건설공사 도급계약, 용역 계약, 물품구매 · 수리 · 제조 계약	대금청구 금액의 2/100 (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입)	매입의무